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청구]

전 문

원 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912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8. 1. 31. 접수 제1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단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이하 ‘A단체’라 한다)는 원고가 2018. 10.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단체는 2021. 2. 10. D에 원고의 대출금채무 합계 30,735,2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배우자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원고와 피고는 2020. 1. 31.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21개회850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21. 11. 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3. 7. A단체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마. 이 법원은 위 라.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지 않음에 따라 A단체와 피고에게 원고를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소송절차를 수계신청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별지